

# 파주시설게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44
----------	-----------

제안년월일 : 2000년 12월 22일  
제안자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류한철

## 1. 수정이유

- 설계자문위원회의 개의 요건을 위촉위원 10인 이상을 과반수로 개정할 경우 현재 위원회의 구성을 50인 이내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는 것을 감안하며 당초 보다 강화된 것으로 판단되어 심의 안전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도록 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위원회의 회의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 안전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 한다는 문구를 삽입함.  
(안 제9조제1항)
- 전문분야별 위원회 개의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도록 함(안 제9조제2항)

##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자문안건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문구 삽입)

② "위촉위원 과반수의" 를 "전문분야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로 수정

## 수 정 안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6조(설계등 자문대상 공사)①위원회의 설계등 자문(이하“자문”이라 한다) 대상공사는 파주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로 한다.</p> <p>1~3 (생략)</p> <p>4.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총공사비가 일정규모이상 증감되는 건설공사로서 규칙에 정하는 공사</p> <p>② (신설)</p> <p>② (생략)</p> <p>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자문안건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위원중 1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p>	<p>제6조(설계등 자문대상 공사) ①위원회에 설계자문을 받아야하는 공사는 파주시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로 한다.</p> <p>1~3 (생략)</p> <p>4. (삭제)</p> <p>②제1항에 의하여 설계자문을 받아야하는 공사중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자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p> <p>1.경기도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의 공사</p> <p>2.긴급한 재해복구공사</p> <p>3.준설공사</p> <p>4.설계감리를 한 공사</p> <p>5.문화재의 개·보수 및 증축공사</p> <p>6.표준설계도서의 의하여 시공하는 공사</p> <p>7.공사내용의 단순·반복적인 공사</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제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p>	<p>제6조(설계등 자문대상 공사) ① ~ ③ (개정안과 같음)</p> <p>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심의안건에 따라 전문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자문안건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전문분야별 위원회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p>